

2026학 년 도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미래학교

동성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2026. 3.



동성고등학교
DONGSEONG HIGH SCHOOL
<https://school.cbe.go.kr/ds-h>

차 례

I. 목 적	1
II. 기본 방침	1
III.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교과협의회 구성·운영	2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 운영	2
2. 교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	4
IV.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4
1. 평가의 기본 사항	4
2. 평가 방법 및 성적 처리	7
(시험지 유출 시 처리기준, 부정행위 예방대책과 처리, 이의신청 처리절차 포함)	
3. 학업 성적 평가 결과 처리	13
4. 학업 성적 처리 방법(인정점)	28
5.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 및 기록	39
V. 창의적체험활동 평가	41
VI. 기타 사항	42
1. 평가관리실 설치·운영	42
2. 성적관련 비위 교직원 처리	43
3. 기타	43
◎ 부 록	44

학업성적관리규정

I.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2026. 2. 12. 일부개정)과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다.

II. 기본 방침

1.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2.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각 교과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평가로 인한 학생의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평가 유형별 시행 비율, 운영 시기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3. 지역 및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충청북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계획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한다.
 4. 교과학습의 평가는 정기시험과 수행평가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실험·탐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과 전문교과Ⅱ 및 체육·예술(계열) 교과(군)의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업 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 ‘고등학교의 실험·탐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과학 탐구 실험’, 보통교과 진로 선택의 ‘수학과제탐구, 사회문제 탐구’, 전문교과Ⅰ의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를 말한다.
1~2학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성격에 따른다.
- ※ 단, 학생의 발달 특성 및 과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기시험은 서·논술형 문항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음.
5. 4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정기시험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6.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기시험,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 교직원이 재직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출제 검토, 인

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한 ‘평가 관련 업무’ 를 담당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8. 부정 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본 규정에 마련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 9.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가 되도록 한다.

Ⅲ.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교과협의회 구성 · 운영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 공정성 ·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평가 관리와 성적 관리,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및 관리, 이에 따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과협의회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 24 조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 운영

가. 위원회 구성 및 임무

- 1) 본 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위원장은 교감(교감 직무대행)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조직 >



- 3)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평가관리 2명, 성적관리 4명, 진로관리 4명 등 총 12명을 둔다.
- 4)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간사는 평가**담당**이 한다.
- 5)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제반 지침(규정)과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 6)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한다.

나. 위원회의 심의 내용

- 1)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제·개정
- 2)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된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학업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 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 4)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홍보,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이의제기 등) 방안 및 보안 강화
-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 6)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 7) 교과목별 기준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 산출 방식 등에 관한 사항
- 8) 고등학교의 학점 이수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에 관한 사항
- 9)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의 일상생활 활동상황 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10)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다. 위원회 운영

- 1) 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에 의거,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운영한다.
-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제반 사항을 검토·심의하고 문제 발생 예방에 힘쓴다.
- 3) 정기회의는 학기 초와 정기고사 실시 전후에 각각 개최한다.

<정기회의 검토 사항>

- 정기고사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
- 교과목별 기준성취율에 따른 분할 점수 산출에 관한 사항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사항
- 출제 오류, 정·오답, 복수정답, 모두 정답 처리에 관한 사항
- 재시험에 관한 사항
- 부정 행위자 징계에 관한 사항 등

- 4) 학교장은 학업성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5)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비치하며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2. 교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과협의회는 각 교과별로 해당교과 담당교사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교과 담당교사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유사교과 간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나. 교과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1)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 계획 수립
- 2) 교과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성취수준) 설정
- 3) 분할 점수 산출에 관한 사항
- 4) 학점 이수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에 관한 사항
- 5) 채점 및 평가 결과 분석·환류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 6) 기타 교과 관련 주요 협의 사항

IV.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1. 평가의 기본 사항

가. 교과 학습의 평가(정기시험 및 수행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준(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 학년은 ‘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나. 교과 학습의 평가계획은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수립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다. 학기(학년)초에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은 ‘성취수준’)을 마련(교과교육과정에 포함 혹은 별도 관리)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 문항을 출제하여야 한다.

라. 교과 학습의 평가(정기시험과 수행평가)를 위하여 학기(학년) 평가계획을 학년별·교과목별로 수립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2026학년도 1·2학년)	2015 개정 교육과정(2026학년도 3학년)
1) 평가의 목적, 평가의 방향과 방침, 평가 유의사항 등 2) 평가(정기시험 및 수행평가)의 영역, 요소 ¹⁾ , 방법, 시기, 횟수, 반영비율 등 3)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과 분할점수 산출방식, 성취도 4) 수행평가 세부기준(영역별 배점과 채점기준), 결시자와 학적변동자 처리 기준 등	
5)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 설정 6) 과목별 학기 단위 성취수준 설정 (공통과목 최소 성취수준 설정 포함)	5) 공통과목 국어, 수학, 영어 및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의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설정 6)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

※ 주요 용어 정리

- (성취기준)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등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실질적인 근거로서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 학생이 무엇을 공부하고 성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지침이 됨
- (성취수준) 학습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각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3~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속한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할 수 있는지를 기술한 것으로 성취기준별 성취수준 및 영역별 성취수준으로 구성
- (영역별 성취수준) 영역에 해당하는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에 도달한 정도를 수준별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한 것
- (학기 단위 성취수준) 학생이 한 학기 동안 학습한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종합하여 나타내는 지표로서, 과목 내 성취기준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특성을 나타내며, 한 학기 동안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수업 및 평가를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최소 성취수준) 각 과목의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의미함

마. 본 규정에서 정기시험은 중간 또는 기말고사(1차지필 또는 2차지필 고사 등)와 같은 일제식 정기고사를 의미하며, 문항 정보표의 구성에 따라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구분한다. 단,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실시하는 영어 듣기 평가는 수행평가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선택형 및 서답형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는 본 규정의 정기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성취기준은 실제 평가의 상황에서 준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학생의 특성·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다. 재구조화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실제 평가의 상황에서 준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성취기준을 통합하거나 일부 내용을 압축하여 재구조화

1) 평가 요소는 교육과정 성취기준 도달의 증거로, 학생들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평가내용을 말한다

할 경우, 성취기준의 내용요소 일부가 임의로 삭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일부 내용요소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 및 평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년(군), 학교급 및 교과(군)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 사. 학기(학년)초에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포함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계획을 마련(학교 교육계획 혹은 별도 관리) 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한다.
- 아.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교과(군)는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한 학기 환산점 100점 중 20% 이상 반영하고, 그 외 교과는 교과협의회에서 반영 비율을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교과(군)에서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수행평가 영역에서만 모두 시행하는 경우 지필평가는 객관식만으로 출제할 수 있다.
- 자. ‘평가(정기시험 및 수행평가)의 영역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평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의미하며, ‘교육 과정의 영역, 핵심 개념, 기능’ 등을 활용하여 교과의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차. 교과별·학년별로 확정된 평가계획은 학기초에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 후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평가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실시 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변경 사항을 안내한다.
- 카. 서술형·논술형 문항 답안은 채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채점하고, 검토 과정을 거쳐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논술형 문항일 경우 모범 답안, 유사 답안을 생략할 수 있음)
- 타.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 교과목 담당 교사는 전산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 확인하고, 그 결과를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 확인시킨다.
- 파.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하. 정기시험 기출문제(정답 포함)를 공개하되, 공개범위와 방법(학교 홈페이지 탑재, 교내 특정 장소 비치, 출력물 제공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한다. (정기시험 기출문제를 공개하되, 공개 범위와 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 공개 기간: 지필평가 시작 1~2주 전 일주일
 - 공개 장소: 1층 본 교무실 앞 책상 위, 영상감지장치(CCTV)설치 구역 이내
 - 공개 시간: 일과 시간[08:30~16:30]
 - 공개 범위: 전년도 해당 시험 기출 원안지 사본 및 정답
 - 공개 방법: 열람 시 눈으로 확인(사진 촬영 불가)
- 거. 모든 교과는 한 학기에 환산점 100점 중 40점 이상 수행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 너. 학교의 특수성과 교육과정 운영 시기, 운영 학점수 및 교과·과목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기시험 운

영 횡수를 학교학업성적관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기본 방침 4항 참고)

* 특성학교 및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 등

다. 고등학교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대학과목 선이수제, IB 등)은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

2. 평가 방법 및 성적 처리

가. 정기시험

- 1) 정기시험 문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및 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내용 영역, 성취 기준 등을 포함한 문항 정보표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며, 동일 교과 담당 교사 간 공동 출제를 한다. 또한, 정기시험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문항 오류가 없도록 교과 내 검토를 강화하여야 한다.
- 2)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가능한 동점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한다. 또한, 다양한 성취수준을 판별할 수 있도록 문항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하되, 평가 문항수 증대, 문항당 배점 다양화, 난이도에 따른 문항 배열에 유념한다.
- 3) 정기시험 관련 보안규정과 시험지 유출 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문제는 출제·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고사 감독을 엄정하게 하여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
- 4) 성적산출의 증빙자료로 ‘성적처리가 끝난 답안지’와 함께 ‘문항정보표와 출제원안지’ 등을 5년간 당해 학교에 보관한다.
- 5) 평가 문제 출제 및 검토는 다음의 사례가 없도록 유의한다.
 - 시판(제공)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채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출제하는 경우
 - 전년도 혹은 이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재 출제하는 경우
 - 객관성의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정답이 없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여 모두 정답 처리하는 경우
 - 예측에 의하여 정답을 쓸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 교과목별 평균이 상식 이상으로 높게 나오도록 평가 문제를 쉽게 출제하는 경우
 - 고사 원안을 제출한 후, 출제된 문제를 수업 중에 지도하거나 문제의 답을 암시하는 경우

나. 수행평가

- 1) 수행평가는 교과 담당 교사가 교과 수업 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으로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야 한다.

※ 수행평가 과제 유형은 「고등학교 학생평가 안내서(툭아보기)」 자료 참고
(예) 서술·논술, 구술·발표, 토의·토론, 프로젝트, 실험·실습, 포트폴리오 등

- 2) 교과협의회에서는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세부 기준(배점)·반영 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 3) 교과 담당 교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 후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4) 성적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라 함’은 학생들의 이의신청·접수·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작성된 성적일람표 등을 의미한다.

- 5) 수행평가 결과물은 학생들의 확인·이의신청·결과 처리가 완료된 이후 당해연도 말까지 보관 후 폐기한다.
- 6)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기본점수*는 수행평가 각 영역 별 만점의 40% 미만의 범위 안에서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기본점수란 수행평가에 응시한 학생이 받는 최소한의 점수를 의미함.
- 7) 학교장은 수행평가가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를 안내하여 수행평가 신뢰도를 제고한다.
- 8) 수행평가는 학생의 학습 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 수행평가 용어 정리

- (학습과제) 학습자들에게서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상 각 교과 교육목표와 관련되는 것으로, 실제 생활에 가치 있고 중요하며 유용한 과제를 의미
- (수행) 학생이 단순히 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답을 구성하는 것, 산출물이나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 태도나 가치관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 등을 모두 포함
- (관찰) 학습자가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평가자가 읽거나, 듣거나, 보거나, 느끼거나 하는 활동을 모두 포함
- (판단) 평가자가 관찰한 것을 객관성·합리성·타당성·신뢰성 등이 있는 기준을 준거로 점수화하거나, 문장화하는 것을 의미

- 9)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둠활동 등을 평가할 때에는 개별 학생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개인별 학습 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 10) 수행평가는 일제식 정기 **정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특정 시기에 집중하거나 **정기시험** 준비기간과 겹쳐 학생의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11) 동일 학년 동일 교과를 2인 이상의 교사가 지도할 경우 수행평가 영역 및 배점은 같되, 평가 방법과 횟수, 시기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2) 모든 수행평가는 성취기준에 기반하여 수업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시간 외 가정 등에서 이루어지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이 포함됨을 유의하여야 함.

13)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평가 시행 전 학생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한다.

가) 인공지능(AI)은 맞춤형 피드백 제공 등을 위해 수업·평가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나) 교사가 직접 학생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평가를 통해 학생의 독자적 사고에 따른 결과물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 실제 평가 상황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유의사항을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다. 평가문항 출제 중 보안 관리

1) 평가와 관련하여 출제 중 다음과 같이 보안에 유의한다.

가) 평가관리실, 교무실(교사연구실) 등 평가 관련 시설의 비밀번호 재설정

나) 평가관리실, 교무실(교사연구실) 등 평가 관련 시설의 출입제한 및 보안 책임자 지정

다) 교직원 자녀 재학 시 평가 업무 배제

2) 평가의 타당성·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평가 실시 전 교직원 연수를 실시한다.

3) 원안지, 정답지 등 평가 자료 파일은 비밀번호를 설정한 이동식 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를 이용하고, 네트워크 전송을 금지한다.(단, 사용한 이동식 저장장치는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출제자가 관리·책임진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 평가와 관련한 비리,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라. 교사 원안 인쇄 및 보안 관리

1) 교과 담당 교사가 출제한 교사 원안은 정해진 결재 절차를 거친 후 인쇄를 의뢰한다.(평가 담당 교사→평가 담당 부장 교사→교감→교장)

2) 교감, 평가 담당 부장 교사 및 평가 담당 교사는 교사 원안 결재 및 보관, 문제지 인쇄 및 보관 과정에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정기고사 실시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교무실 및 필요한 시설을 통제 구역으로 관리하고, 출입자 확인 장치(CCTV, 동작 감지센서 등)를 설치한다. 관리 책임자는 교감(교감 없는 학교는 평가 담당 부장교사)으로 한다.

4) 교사 원안 인쇄 기간 중 인쇄실을 통제 구역으로 관리하되, 인쇄 담당자 관리는 행정실 책임자가 하며, 문제지 인쇄 시 평가 담당교사(평가 담당 부장교사 또는 교감) 등이 입회한다.

- 5) 평가 담당 교사는 고사 원안과 인쇄된 문제지, 원지(인쇄 원본을 뜨는 롤형 원판지), 파지 등을 인쇄실에서 인수한 후, 고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한다.
- 6) 출제 교사는 평가 담당교사(평가 담당 부장교사 또는 교감) 등의 입회하에 인쇄된 문제지를 평가관리실에서 검토한 후 포장·봉인하고, 봉인된 문제지와 여분을 평가 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 7) 고사 원안과 포장·봉인된 고사 문제지는 교감 책임 하에 평가관리실에서 관리하며,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한다.

마. 고사 관리

1) 고사 시행

가) 감독 교사 배정

- (1) 감독 교사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배정하고 학생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도록 유의한다.
- (2) 담임교사의 자기 학급 시험 감독을 배제하며, 학교 내 교직원의 자녀 또는 친인척(4촌 이내)이 재학할 경우도 해당 학급 시험 감독을 배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 동일 학교 내 교직원의 자녀 또는 친인척(4촌 이내)이 재학할 경우, 자녀 또는 친인척의 학급 담임, 교과 담당, 평가문항 출제·검토, 문제지 인쇄, 채점, 평가 관리업무 등에 해당 교직원을 배제(평가 담당 부장교사, 교감, 교장일 경우 반드시 대결자 지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 (3) 감독 교사는 고사실 당 2명, 복도 감독 1명을 배치하도록 노력하며 당해 고사 시간에 치르는 교과목 출제 교사 1명 이상을 비상 대기하도록 한다.
- (4) 감독 교사 보조를 위하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을 관련 절차를 거쳐 활용할 수 있다.
- (5) 감독 교사 배정 사항은 반드시 고사 당일 평가 관련 교직원들에게만 공개하며 보안에 유의한다.

나) 부정행위 예방 대책

- (1) 학교장은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사 시행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분반, 학년 간 혼반, 시차제 등교, 감독 교사 증원 배치 등).
- (2)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한다.
- (3) 문제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손을 들어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말이나 행위를 금한다.
- (4) 부정행위 유형과 처리에 대한 사항을 고사 시행 전에 교직원 연수를 시행하고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 (5) 감독 교사는 고사 시간을 준수하며 지정된 시간 전에 학생이 퇴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6) 부정 행위자(협조자 포함)의 성적처리는 본 규정에 따라 엄정히 하며, 담임교사 및 감독 교사의 확인서를 받아 학업성적관리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사전에 대비토록 한다.

※ 1형 당뇨병으로 고사 시 혈당관리가 필요한 경우, 혈당 측정 및 인슐린 주입을 위한 의료 지원기

기와 전자기기 반입을 교사 확인을 거쳐 허용하고, 필요시 시험 중 인솔된 주사 및 당류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1476, 2024. 4. 11.)

(7) 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 (가) 본령 이전 및 종료령 이후 문제를 풀거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나)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라) '교실 내 반입 금지 물품' 을 반입하거나 '시험 중 휴대 금지 물품' 을 휴대하는 행위
- (마)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바)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사)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 교실 내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재 기능(블루투스)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시험 중 휴대 금지 물품: 공책, 교과서, 참고서 등 평가와 관련 있는 모든 유인물·메모 포함
※ '휴대'의 의미: 신체에 부착하는 경우, 의복 주머니 등에 소지하는 경우, 책상 위나 서랍에 물건을 두는 경우, 기타 책상 주변 등 응시자가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물건을 비치하는 행위

다)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

감독 교사는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학생에게 알리고 평가 중 부정행위자의 답안지에 적색 펜으로 '부정' 이라 표기하며 답안지와 문제지, 부정행위 도구를 회수하여 평가담당자에게 알리고,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1) 부정행위 의심 신고접수는 학생 혹은 감독 교사의 경위서를 받아 접수한다.
- (2)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확인서 및 신고자 경위서(감독 교사 포함)를 제출받아 이를 증빙서류로 보관한다. 부정행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장을 확인서를 통해 징구한다.
-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된 참고인도 필요시 회의에 참석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 및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에 대한 처리 방침을 결정한다.
- (4) 평가담당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 (5)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통지 후 3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6) 이의신청이 있을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재심의를 하여야 하며, 학생이나 학부모가 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 재심의 결과를 최종 통지한다.
- (7) 최종 심의 후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로 확정 시 해당 과목의 해당 고사성적은 0점 처리한다.
- (8)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로 확정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학생안전부)에 회부하여 학칙

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다.

라) 답안지 회수 및 정답 공개

- (1) 답안지는 OMR카드를 사용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한다.
 - ㉠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한 사전 지도(담임교사, 감독 교사)
 - ㉡ 객관식 답안 표기 내용 정정 시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본인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
 - ㉢ 객관식 답안은 OMR카드에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서술형 답안은 모든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가능. 답안 표기는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란에만 완전하게 표기하여야 함. 다음의 경우 오답 처리될 수 있음.
 - 필기구의 종류 및 표기 크기에 관계 없이 2곳 이상 답란이 표기된 경우
 -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란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 유색 볼펜, 연필, 샤프 등 필기구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표기한 경우
- (2) 답안지는 감독 교사가 매수를 확인하고 표지에 필요한 사항(응시자, 결시자 등)을 기록, 서명한 후 평가 담당 교사에게 인계하고, 평가 담당 교사는 인수한 답안지를 취합·확인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인계인수 시 답안지 분실을 막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답안지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3) 교과목 담당 교사는 해당 교과목 고사 종료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채점 기준(서술형 문제의 유사 정답, 부분 점수 등 포함)을 안내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철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 채점 및 답안지 처리, 이의신청

- 가) 서술형 답안지는 문항 번호에 정·오답 표시를 하고, 문항별 부여 점수란을 만들어 그 란에 점수를 기입하며, 답안 내용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채점하고 착오 여부를 점검한다.
- 나) 답안지 채점 후 채점 내용 및 점수표기를 수정할 경우 채점 수정 문항의 정·오표시와 점수 표기를 수정하고 채점자가 날인한다.
- 다) 채점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유사 정답이나 부분 점수를 부여해야 할 경우에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수정·보완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장 결재를 받아 적용한다.
- 라)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 답안지는 채점, 확인 등을 이유로 학교 밖으로 유출하거나 학생을 통한 심부름 등으로 훼손·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마) 채점이 끝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점수)를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결과(점수) 공개 후 7일 이내를 이의신청기간으로 두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세히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이의신청 절차

학생 또는 학부모의 성적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한다. 이의신청은 먼저 교과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미해결 시 교과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며,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학교장 결재 포함) 절차를 통하여 처리한다. 또한, 평가 문항의 이의신청에 따른 오류 검증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수행평가 관련 이의신청은 교과협의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되, 위의 과정에 준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절차 안내 → 담당 교과목 교사에게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1. 해당 교과협의회 협의,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 처리 결과 본인 통보 → 종결 및 재발 방지 대책강구

바) 고사 원안, 문항 정보표 작성 등과 같이 평가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서 중대한 오류(문항 출제 오류, 재시험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성적정정대장에 기록하여 결재를 얻은 후 수정·보완한다.

사) 서술형·논술형 답안 채점 시 응시자의 성명을 가리고 채점하여 채점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바. 시험지 유출 시 처리 기준

- 1) (상황 파악) 문제지 유출 정황을 즉시 파악한 후 학교장 및 교육청에 보고한다.
- 2) (대책 협의) 학교장 지시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대책에 관해 심의한다. (관련 교과 담당교사 참석)
- 3) (대책 결정) 문제지 유출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학교장이 최종 대책을 결정한다.
- 4) (대책 공지) 사안에 대한 상황 및 최종 결정사항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결정된 대책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한다.
- 5) (관련자 처벌) 문제 유출 관련 학생을 파악하여 교칙에 따라 처벌하고 성적 관련 비위자에 대하여는 교육청에 보고하여 후속 조치를 취한다.
- 6) (예방 강화) 유출 문제 발생에 관련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한 후 보완하고 전 교직원에게 알리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보안을 강화한다.

3. 학업 성적 평가 결과 처리

가. 성적 일람표 작성

- 1) 학급 담임 교사는 고사마다 학생 변동 사항을 결시자 현황표로 정리하여 평가 대상자를 확정 후 담당 과목 지도 교사에게 인계한다.
- 2) 담당 과목 지도 교사는 채점 결과를 전산매체에 입력한다. 다만, 정기시험 이외의 수행평가 성적을 합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조 자료(합산 과정이 나타난 성적 일람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성적처리하고,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다.

3)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과목 담당교사가 작성한다. 이때,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목별 성적 일람표는 **정기시험**(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과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가) 2022 개정 교육과정(2026학년도 1·2학년)의 성적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교양 교과(군)의 과목 및 (2)~(5)호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학점, **원점수/과목 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석차등급, **수강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 (2) 보통 교과(군)의 사회·과학 교과(군)의 융합 선택 과목(‘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및 특수교육 전문 교과(군)는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수강자수**를 산출한다.
- (3)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실험’ 및 체육·예술 교과(군)의 과목(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 제외)은 **학점, 성취도**를 산출한다.
- (4) **보통 교과 교양 교과(군)의 과목은 학점, 이수여부**를 산출한다.
- (5)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으로 이수한 과목[체육·예술 교과(군)의 과목(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체육·예술 교과(군) 선택 과목 제외), 공통과목의 ‘과학탐구실험’,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학점, **원점수/과목 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수강자수**를 산출한다.

나) 2015 개정 교육과정(2026학년도 3학년)의 성적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교양 교과(군)의 과목 및 (2)~(5)호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동석차수),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 (2) 보통 교과(군)의 진로 선택 과목은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산출한다.
- (3)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실험’ 과 전문 교과Ⅱ, Ⅲ는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만 산출하고, 이 중 전문 교과Ⅱ의 실무과목은 능력단위로 산출할 수 있으며, 능력단위 평가 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만 산출한다.
- (4) 보통 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만 산출한다.
- (5)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

4) **정기시험**과 수행평가의 영역(고사)별 반영 비율에 따른 환산 점수 합계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또한, 원점수는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하고, 과목평균은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되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성취도별 분포비율은 소수 둘째 자리에

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5) 성적, 과목별 성적 일람표, 학급별 성적 일람표 등의 정정은 근거가 되는 보조자료를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다만 인적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심을 생략할 수 있다.) 후 성적 정정 대장에 사유와 내용을 기록하여 결재를 받는다.
- 6) 과목별 성적일람표의 작성 방법은 다음 ‘예시’와 같다.

<예시 1> 2022 개정 교육과정(2026학년도 1·2학년)의 과목별 성적일람표 및 해석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2026학년도 제1학기

공통국어1 성적일람표

제1학년 (강의실명)

과목담당교사 () 인

평가방법(반영비율)		정기시험(60%)		수행평가(40%)				합계	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석차 (동석차수)	수강자수
명칭,영역 (반영비율)	1회 (30%)	2회 (30%)	○○ ○ (10%)	◇◇ ◇ (10%)	□□ □ (10%)	△△ △ (10%)							
반/번호, 성명													
1/1	김길동	28.41	29.16	8.00	9.00	8.00	10.00	92.57	93	A	1	4(15)	232
1/2	나민주	23.94	21.39	7.00	8.00	7.00	7.00	74.33	74	C	3	123	232
1/3													
수강자 최고점		30.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0					
수강자 최저점		9.95	10.00	5.00	6.00	7.00	5.00	42.95					
수강자 평균		23.42	25.74	8.40	8.16	8.76	7.59	82.07					
강의실 평균		21.24	24.43	8.50	7.52	8.91	7.35	77.95					
과목 평균									82.1				
성취도별 분포비율													A(20.2) B(35.3) C(21.5) D(15.9) E(7.1)

[보통교과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

2026학년도 제1학기

여행지리 성적일람표

제2학년 (강의실명)

과목담당교사 () 인

평가방법(반영비율)		정기시험(60%)		수행평가(40%)				합계	원점수	성취도	수강자수	
명칭,영역 (반영비율)	1회 (30%)	2회 (30%)	○○○ (10%)	◇◇◇ (10%)	□□□ (10%)	△△△ (10%)						
반/번호, 성명												
1/1	김길동	28.41	29.16	8.00	9.00	8.00	10.00	92.57	93	A	232	
1/2	나민주	23.94	21.39	7.00	8.00	7.00	7.00	74.33	74	C	232	
1/3												
수강자 최고점		30.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0				
수강자 최저점		9.95	10.00	5.00	6.00	7.00	5.00	42.95				
수강자 평균		23.42	25.74	8.40	8.16	8.76	7.59	82.07				
강의실 평균		21.24	24.43	8.50	7.52	8.91	7.35	77.95				
과목 평균									82.1			
성취도별 분포비율												A(20.2) B(35.3) C(21.5) D(15.9) E(7.1)

[보통교과 체육·예술 과목(특수목적고 선택 과목 제외) 및 공통과목의 과학탐구실험]

2026학년도 제1학기 음악 성적일람표

제1학년 (강의실명)

과목담당교사 () 인

평가방법(반영비율)		정기시험(60%)		수행평가(40%)				합계	원점수	성취도	수강자수
		1회 (30%)	2회 (30%)	○○○ (10%)	◇◇◇ (10%)	□□□ (10%)	△△△ (10%)				
명칭,영역 (반영비율)	반/번호, 성명										
	1/1 김길동	28.41	29.16	8.00	9.00	8.00	10.00	92.57	93	A	323
	1/2 나민주	23.94	21.39	7.00	8.00	5.00	7.00	72.33	72	B	323
	1/3										
	수강자 최고점	30.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0			
	수강자 최저점	9.95	10.00	5.00	6.00	7.00	5.00	42.95			
	수강자 평균	23.42	25.74	8.40	8.16	8.76	7.59	82.07			
	강의실 평균	21.24	24.43	8.50	7.52	8.91	7.35	77.95			
	과목 평균								82.1		

- ‘김길동’의 정기시험 1회 환산점수 28.41은 100점 만점에서 94.7점을 받았을 경우이며, 수행평가 ○○○ 8.00은 50점 만점에서 40점을 받은 경우이다.
- 수강자 최고점·수강자 최저점·수강자 평균·강의실 평균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성적 일람표의 합계는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며, 이를 이용하여 석차, 동석차 및 석차등급을 구한다.
-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성적 일람표의 ‘합계’, ‘석차(동석차수)’는 ‘석차등급’을 산정한 근거를 참고로 보이기 위한 것이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본란이 없다.
- 성적일람표에서 과목 표준편차는 미표기한다.
- 성취도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성취도별 분포비율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예시 2> 2015 개정 교육과정(2026학년도 3학년)의 과목별 성적일람표 및 해석

[보통교과]

2026학년도 제1학기
화법과 작문 성적일람표

제3학년 (강의실명)

교과담당교사 () 인

평가방법(반영비율)		정기시험(60%)		수행평가(40%)				합계	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	석차 (동석자수) /수강자수
명칭,영역 (반영비율)	반/번호, 성명	1회 (30%)	2회 (30%)	○○○ (10%)	◇◇◇ (10%)	□□□ (10%)	△△△ (10%)					
1/1	김길동	28.41	29.16	8.00	9.00	8.00	10.00	92.57	93	A	1	4(15)/532
1/2	나민주	23.94	21.39	7.00	8.00	7.00	7.00	74.33	74	C	5	273/532
1/3												
수강자 최고점		30.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0				
수강자 최저점		9.95	10.00	5.00	6.00	7.00	5.00	42.95				
수강자 평균		23.42	25.74	8.40	8.16	8.76	7.59	82.07				
강의실 평균		21.24	24.43	8.50	7.52	8.91	7.35	77.95				
과목 평균									82.1			
과목 표준편차												

[전문교과]

2026학년도 제1학기
상업 경제 성적일람표

제3학년 (강의실명)

교과담당교사 () 인

평가방법(반영비율)		정기시험(60%)		수행평가(40%)				합계	원점수	성취도 (수강자수)
명칭,영역 (반영비율)	반/번호, 성명	1회 (30%)	2회 (30%)	○○○ (10%)	◇◇◇ (10%)	□□□ (10%)	△△△ (10%)			
1/1	김길동	28.41	29.16	8.00	9.00	8.00	10.00	92.57	93	A(553)
1/2	나민주	23.94	21.39	7.00	8.00	7.00	7.00	74.33	74	C(553)
1/3										
수강자 최고점		30.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0		
수강자 최저점		9.95	10.00	5.00	6.00	7.00	5.00	42.95		
수강자 평균		23.42	25.74	8.40	8.16	8.76	7.59	82.07		
강의실 평균		21.24	24.43	8.50	7.52	8.91	7.35	77.95		
과목 평균									82.1	
과목 표준편차										

[진로 선택 과목]

2026학년도 제1학기 실용 국어 성적일람표

제3학년 (강의실명)

교과담당교사 () 인

평가방법(반영비율)		정기시험(60%)		수행평가(40%)				합계	원점수	성취도 (수강자수)
		명칭,영역 (반영비율)	1회 (30%)	2회 (30%)	○○○ (10%)	◇◇◇ (10%)	□□□ (10%)			
반/번호, 성명	성명									
1/1	김길동	28.41	29.16	8.00	9.00	8.00	10.00	92.57	93	A(553)
1/2	나민주	23.94	21.39	7.00	8.00	7.00	7.00	74.33	74	B(553)
1/3										
수강자 최고점		30.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0		
수강자 최저점		9.95	10.00	5.00	6.00	7.00	5.00	42.95		
수강자 평균		23.42	25.74	8.40	8.16	8.76	7.59	82.07		
강의실 평균		21.24	24.43	8.50	7.52	8.91	7.35	77.95		
과목 평균									82.1	
성취도별 분포비율									A(30.2) B(45.3) C(24.5)	

- ‘김길동’의 **정기시험** 1회 환산점수 28.41은 100점 만점에서 94.7점을 받았을 경우이며, 수행평가 ○○○ 환산점수 8.00은 50점 만점에서 40점을 받은 경우이다.
- 수강자 최고점·수강자 최저점·수강자 평균·강의실 평균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I’ 성적 일람표의 합계는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출하며, 이를 이용하여 석차, 동석차 및 석차등급을 구한다.
-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I’ 성적 일람표의 ‘합계’, ‘석차(동석차수)/수강자수’란은 ‘석차등급’을 산정한 근거를 참고로 보이기 위한 것이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본란이 없다.
- ‘전문교과Ⅱ,Ⅲ’ 성적일람표의 합계는 환산 점수 합계는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또한 원점수는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하고, 성취도는 원점수를 이용하여 구한다.

▶ 보통교과 ‘과학탐구실험’과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으므로, 성적 일람표 환산 점수 산출 방법은 ‘전문교과Ⅱ’의 방법을 준용한다.

- 과목평균·과목표준편차는 수강자 점수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성취도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성취도별 분포비율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나. 성취도와 석차등급

1)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기존 성취율에 따른 분할 점수를 과목별로 설정할 수 있다. 단, 추정분할점수 설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의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 추정분할점수 산출은 평가문항이 확정된 후 평가 실시 이전에 수행하며, 산출된 과목별 분할점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함.

※ 분할점수 입력은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분할점수-분할점수관리]를 반드시 활용함. (추정분할점수 설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산출하는 내용은 2025학년도부터 전 학년에 동시 적용한다.)

가) 공통과목의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 성취율 40% 미도달자 중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이수 시 성취도 ‘E’ 부여

나) 단, 공통과목 ‘과학탐구 실험’의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80% 이상 ~ 100%	A
60% 이상 ~ 80% 미만	B
40% 이상 ~ 60% 미만	C

※ 성취율 40% 미도달자 중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 시 성취도 ‘C’ 부여

다) 선택과목의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라) 단, 체육·예술 교과(군)의 과목(특수목적고등학교 체육·예술 교과(군)의 선택과목은 해당하지 않음)의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80% 이상 ~ 100%	A
60% 이상 ~ 80% 미만	B
60% 미만	C

마) 미이수한 과목을 공동교육과정 또는 온라인학교를 통해 재이수한 경우 최하위 성취도를 부여한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기존 성취율에 따른 분할 점수를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할 수 있다.

성취율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단, 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과학탐구 실험, 보통 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포함), 전문 교과 I 과학계열 교과(군)의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전문 교과 I 국제계열 교과(군)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의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80% 이상 ~ 100%	A
60% 이상 ~ 80% 미만	B
60% 미만	C

<2022 개정 교육과정(2026학년도 1·2학년)>

적용 교과목		성취도
교과(군)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교과의 교과(군)(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한문)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선택 과목 • 전문 교과, 특수교육 전문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과목(과학탐구실험 제외) • 전체 과목 	A, B, C, D,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교과의 체육, 예술(군) • 보통 교과의 공통 과목 과학 교과(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과목 ※ 특수목적고등학교 선택 과목(체육, 예술 교과(군) 과목) 제외 • 과학탐구실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교과의 교양 교과(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과목 	P

<2015 개정 교육과정(2026학년도 3학년)>

적용 교과목		성취도
교과 영역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 탐구(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 생활(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과목, 일반 선택 • 공통 과목(과학탐구실험 제외), 일반 선택 • 일반 선택 	A, B, C, D,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교과 I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외국어 계열, 국제 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교과 II, III • 체육·예술 • 기초, 탐구,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과목 • 일반 선택, 진로 선택 • 진로 선택, 공통 과목(과학탐구실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교과 I (과학 계열, 국제 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철학, 논리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과목 	P

※ 성취도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에 따라 평정함.

3) 과목별 석차등급은 환산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단,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수강자수와 누적 등급 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2026학년도 1·2학년)〉

석차등급	석차누적비율
1등급	~ 10%이하
2등급	10%초과 ~ 34%이하
3등급	34%초과 ~ 66%이하
4등급	66%초과 ~ 90%이하
5등급	90%초과 ~ 100%이하

〈2015 개정 교육과정(2026학년도 3학년)〉

석차등급	석차누적비율
1등급	~ 4%이하
2등급	4%초과 ~ 11%이하
3등급	11%초과 ~ 23%이하
4등급	23%초과 ~ 40%이하
5등급	40%초과 ~ 60%이하
6등급	60%초과 ~ 77%이하
7등급	77%초과 ~ 89%이하
8등급	89%초과 ~ 96%이하
9등급	96%초과 ~ 100%이하

4) 교과별 성취도와 석차 등급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2022 개정 교육과정(2026학년도 1·2학년)의 성취도와 석차등급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보통교과 및 전문 교과는 ‘성취도(A-B-C-D-E)’와 ‘석차등급(1~5 등급)’을 병기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 (2) 보통 교과의 과학탐구 실험 및 체육·예술 교과(군)의 과목(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 제외)은 ‘성취도(A-B-C)’만으로 성적을 산출하며, 교양 교과(군)는 ‘이수여부’란에는 ‘P’를 입력한다.
- (3) 보통 교과의 사회(역사/도덕 포함)·과학 교과(군)의 융합 선택 과목(‘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과 특수교육 전문 교과는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를 5단계(A~E)로 산출한다.
- (4) 전문교과 전공일반과목을 능력단위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 전공실무과목과 동일하게 능력단위로 산출한다.
- (5) 일반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경우에도 보통교과 내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 편성·운영 시 동일하게 ‘성취도 5단계(A-B-C-D-E)’, ‘석차등급(1~5등급)’을 병기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대입전형자료 제공 시 학생 개인별 교과학습발달상황 성적 정보([참고자료 10]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 이외에 과목별 평가방식(정기시험/수행평가 반영 비율, 수행평가 영역명), 학기말 성취도별 분할점수가 추가로 제공됨(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108(2025.01.13.))

나) 2015 개정 교육과정(2026학년도 3학년)의 성취도와 석차등급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I’은 ‘성취도(A-B-C-D-E 또는 A-B-C)’와 ‘석차등급(1~9등

급) 을 병기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 (2) 보통교과의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선택 과목은 ‘성취도(A-B-C)’ 만으로 성적을 산출하며, 교양교과(군)는 ‘성취도’ 와 ‘석차등급’ 란에는 ‘P’ 를 각각 입력한다.
- (3) 보통교과 공통과목 ‘과학탐구실험’ 및 ‘진로 선택 과목’ 의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를 3단계(A~C)로 산출한다.
- (4) 전문교과Ⅱ, Ⅲ은 성취도를 5단계(A-B-C-D-E)로 평정하며, ‘석차등급’ 은 산출하지 않는다. 다만, 전문교과Ⅱ 기초과목은 실무과목과 동일하게 능력단위로 산출할 수 있으며, 능력단위 평가 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만 산출한다.
- (5) 전문교과Ⅰ 체육계열·예술계열 교과(군)의 과목은 ‘5단계·9등급’ 으로 성적처리 하고,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포함) 은 ‘성취도 3단계·성취도별 분포비율’ 로 성적처리 한다.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과목 편제를 변경하여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된 교과(군)의 평가방법 및 성적처리 유형을 준용한다.

라)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에 따라 환산 점수 합계를 처리하는 ‘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일’ 은 교과(목)별 평가 계획 상 최종 시험일(기말고사, 2차 시험 등)이며, ‘명예졸업’ 학생은 퇴학, 자퇴, 제적, 휴학 학생에 준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 과목별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하되, 인정점 부여 시 교육정보시스템의 기준고사/영역의 기준점수와 평균점수·평균점수비율에서 사용하는 평균은 당해 **정기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 1차 시험, 2차 시험 등)에 응시한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응시학생의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함.

※ 교육정보시스템의 동점자처리규정에서 **정기시험** 배점순을 지정할 경우 결시생의 인정점은 점수만 존재하고 해당고사의 배점 정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배점 정보에 의해 해당고사를 응시한 학생이 우선이 됨.

마) 가급적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환산점수에서 소수 둘째 자리 이상의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바) 동점자 처리는 본교 교과협의회에서 결정하며, 가급적 동점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때 ‘5단계(2022 개정 교육과정)’ 또는 ‘9단계(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 기준표의 석차누적비율은 중간석차백분율로 사용한다.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 - 1) / 2

- 중간석차 적용은 동점자(동석차)가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등급 범위 내에서 생기는 동점자(동석차)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석차 산출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

(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8조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한 학교는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학과별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

- 동일한 교과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 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동일한 교과·과목이고 학점, 수강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다만, 교육과정 편제상으로 학습 내용과 성취기준이 달라 평가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달리할 수 있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위탁교과와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포함)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원점수, 과목평균 등을 기록할 수 있고, 성취도 또는 이수여부를 기록한다.

3)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의 석차를 부여하고 () 안에 동점자 수를 병기한다.

4)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포함) 및 자율고등학교 등의 직업과정 운영학교, 특성화고등학교(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등에서 개설한 교과(과정)를 계열이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강한 경우의 수강자수는 계열(학과)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5) ‘재·전·편입학생’ 과 ‘명예졸업, 학업중단 학생(퇴학, 자퇴, 제적, 휴학 등)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본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 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명예졸업생 및 학업중단 학생(퇴학, 자퇴, 제적, 휴학 등)’ 과 ‘재·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 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6)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2026학년도 1·2학년)>

구 분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 별 분포비율	석차 등급	수강 자수	비 고	
보 통 교 과	공통 과목	○	○	5단계	○	5등급	○	
	과학탐구실 험	-	-	3단계	-	-	-	
	선택 과목	○	○	5단계	○	5등급	○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 포함
	사회(역사/ 도덕 포함) ·과학 교과 (군) 융합 선택	○	○	5단계	○	‘·’	○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만 해당함
	체육·예술 교 과(군)	-	-	3단계	-	-	-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체육·예술 교과(군) 선택 과목 제외
교양 교과 (군)	-	-	P	-	-	-	•교양 교과(군)의 P는 성취도가 아닌 ‘이수여부’란에 입력	
전문 교과	○	○	5단계	○	5등급	○		
특수교육 전문 교과	○	○	5단계	○	‘·’	○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 전문교과로 개설시에도 ‘석차등급’ 미산출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중 수강자수 5명 이하인 과목	○	○	5단계	○	‘·’ 또는 ‘5등급’	○	•체육·예술 교과(군)의 과목(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체육·예술 교과(군) 선택 과목 제외), 공통과목의 ‘과학탐구실험’,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공동교육과정 및 온 라인학교 개설 과목	○	○	5단계	○	‘·’	○	•체육·예술 교과(군)의 과목(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체육·예술 교과(군) 선택 과목 제외), 공통과목의 ‘과학탐구실험’,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학교 밖 교육	‘·’	‘·’	‘·’	‘·’	‘·’	‘·’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경우 ‘·’ 표기	

<2015 개정 교육과정(2026학년도 3학년)>

구 분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 등급	비 고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보통교과	공통 과목	○	○	○	5단계	○	○	•(성취도 3단계) 과학탐구실험 ※ 과학탐구실험은 석차등급 미산출	
	일반 선택 과목	기초/ 탐구/ 생활·교양	○	○	○	5단계	○	○	•교양 교과(군) 제외
		체육· 예술	-	-	-	3단계	-	-	•수강자수 입력하지 않음
	진로 선택 과목 ※기초/탐구/생활 ·교양/체육·예술		○	○	- ※ 성취도 별 분포비율 입력	3단계	○	-	• 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I·II' 포함 • 교양 교과(군) 제외 • '석차등급' 및 '표준편차' 삭제, '성취도별 분포비율' 입력
	교양 교과(군)		-	-	-	P	-	P	
전문 교과 I		○	○	○	5단계	○	○	•(성취도 3단계) 융합과학 탐구, 과학 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 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전문 교과 II		○	○	○	5단계	○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전문 교과 III		○	○	○	5단계	○	-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에 한함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 I 중 수강자수 13명 이하인 과목		○	○	○	교과(군) 별 3단계 또는 5단계	○	·,· 또는 '○등급'	•보통 교과 공통과목 과학탐구실험, 진로 선택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 과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 목 교양교과(군)의 과목 제외	
공동교육과정 과목		○	○	○	교과(군) 별 3단계 또는 5단계	○	-	• 보통 교과 진로선택과목(진로선택으 로 편성된 전문 교과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 과(군)의 과목 제외	
학교 밖 교육	진로 선택과목 (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및 고시외 과목 포함), 교양 교과(군), 전문교과 II	•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경우 '·' 표 기	

- ※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고교단계에서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으로 '공통과목'을 신설하였으며,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선택과목'(일반선택, 진로선택)을 세분화하였다.
-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전문 교과II를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으로 개편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를 강화하였다.
- ※ 일반고등학교(자율고 포함)에서 전문 교과(전문 교과 I, 전문 교과 II)를 개설하는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며, 성적산출 시 진로선택과목의 규정을 따른다.

4. 학업 성적 처리 방법

가. 인정점 부여

교과목별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결시한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 결시 이전·이후의 고사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아래 공식), **공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인정점이 만점을 넘을 경우에는 만점으로 환산한다.**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2026학년도 충청북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준하여 다음과 같고,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text{결시과목의 점수} = \text{기준고사 득점} \times \frac{\text{결시고사 전체평균}}{\text{기준고사 전체평균}} \times \text{인정점비율}$$

- 1) **정기시험** 인정점을 부여하는 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학생이 응시한 **정기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정기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 2) 학생이 **정기시험** 이후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할 경우, 평가기간 동안 미인정 결시로 인한 인정점은 **해당 정기시험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입력한다.
- 3) 재·전·편입학 등 학적변동자의 동일(유사) 교과 성적인정과 반영 방법은 본 규정을 따르고,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4) 결시생의 인정점은 다음과 같이 성적을 산출한다.

인정비율	인정사유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시 - 병역 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결시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 -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진학관련 고사 응시, 교육활동과 관련 있는 교통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고 등) - 다음 경조사로 인한 결시(담임교사 확인서 첨부)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학으로 인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 -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담당 부서 의견서 첨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로 인한 결시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8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으로 인한 결시(‘의사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 등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결시(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 후보 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정 기간 및 횟수: <u>고사 기간 중 1일</u> (2) 인정 방법: 담임교사 의견서와 학부모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 승인 후 인정(담임교사의 생리인정 결석 내부결재)
<p style="text-align: center;">최하점의 차하점(-1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인정 결시 - 징계로 인한 결시 <p>※ 응시생의 최하점이 0점일 경우, 해당 결시로 인한 인정점은 0점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 행위자가 부정 행위를 한 해당 과목 - 부정 행위 협조자도 부정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p style="text-align: center;">정기시험 모두 결시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기 내 한 번도 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결석 상황을 고려하여 수행평가 점수(기준점수)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산출식에 의해 정기시험 인정점을 부여하고,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점을 부여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text{인정점수} = \text{수행평가 득점} \times \frac{\text{정기시험 전체평균}}{\text{수행평가 전체평균}} \times \text{인정점 비율}$ <p>※ 공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인정점수가 100점을 넘는 경우는 100점으로 환산함.</p> </div>

나. 재·전·편입 학생, 학업중단학생, 전출 학생, 복학생 등의 성적 처리

- 1)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유)학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한다.
 - 2) 재취학, 재·전·편입학생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 가) 재취학, 재 전 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재 전 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한다.
 - 나)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원적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 다) 재취학, 재·전·편입학한 이후 성적 산출을 위한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평가의 성적을 반영한다. 다만, 결시 등의 사유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친다.
- 라) 가)~다) 호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 마)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의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정기시험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비공개로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1회고사 성적		2회고사 성적		비고
	원적교	재입학 등	원적교	재입학 등	
기본 원칙	○	×	×	○	원적교 1회고사+재입학 등 2회고사
동일 평가 성적 중복	○	×	○	○	원적교 1회고사+재입학 등 2회고사
동일 평가 성적 미비	×	×	×	○	재입학 등 2회고사에 따른 인정점* +재입학 등 2회고사 * 원적교에서 결시하여 성적이 없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인정점 부여
동일 평가 성적 미비 (모든 평가)	×	×	×	×	결시 사유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인정점 부여 ** 응시기회가 모두 없었을 경우와 모두 결시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인정점 부여

※ 수행평가의 경우, 복학 및 재·전·편입학한 학생의 성적처리 방안을 평가 계획에 포함하되, 교과협의회를 통해 원적교 성적을 유사한 영역 평가의 성적으로 인정 가능

다.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 성적 처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 1)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재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 2)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재취학, 재 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재취학, 재 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과 합산한다.
- 3) 재취학, 재·편입학 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국내학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재 편입학 이후 성적을 인정한다.
- 4) 1)~3)호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라.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의 성적처리

- 1) 학교장은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에게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가) 각급 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나)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준)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 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 다)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할 수 있다.
- 2)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은 학적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종합의견 등의 해당란(1학년→3학년 진급이면 2학년란, 2학년→졸업이면 3학년란)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입력하고,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결과를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마.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전문교과Ⅲ

- 1) 2015 개정 특수교육과정의 ‘전문교과Ⅲ’는 전문교과Ⅱ의 성적처리 유형 및 평가방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3학년)
- 2) 2022 개정 특수교육 전문교과는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 성적처리 유형 및 평가 방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2학년)

바.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 수강학생 성적처리

- 1)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 가) 정기시험은 등교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다.

2)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의 평가 방법

가) 평가는 등교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등교하여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원격으로 실시할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실시한다.

- 다만, 원격으로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 학교의 장은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 교과별(학년별) 협의회 등에서 원격수업 운영계획(평가 관련 내용 포함)을 마련하고, 원격수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위학교의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등과 통합 운영 가능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744(2023.1.27.)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 안내’ 참조)

사.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 수업) 성적처리 및 입력방식

1)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구체적인 성적 산출 방식은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등학교」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 참고)

2) 성적처리

가)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한 과목의 성적처리는 별표 9 및 본 지침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성적 산출 방식은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등학교」 149쪽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 참고)

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제3조의2에 따라 과목 이수를 인정 받은 학생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에(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명, 이수학점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예시]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생활과 과학: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을 통해 ○학점 이수함.	

아.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처리

1)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성적처리

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처리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평가(수행평가, 정기시험)는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정기시험**에 미응시 할 경우 본 규정에 의거하여 질병 결시에 해당하는 인정점을 부여한다.

자. 보호소년 등 위탁교육기관 학생의 성적처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본 지침의 ‘학업성적처리 방법’의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소년보호기관 위탁 학생의 재적교 평가 응시 방법]

※ 법무부 소속 소년보호기관 중 수업일수는 인정하나 자체 평가 및 성적처리가 불가능한 기관에 한함.

◦ 기관별 역할

구분	소년보호기관	재적교
평가 전	1. 응시 희망자 조사 2. 응시생 재적교 협조 공문 발송 3. 재적교와 평가 운영 방안 협의 4. 시험지 수령	1. 소년보호기관과 평가 운영 방안 협의 2. 소년보호기관 협조 공문 발송 3. 시험지 발송
평가 중	<소년보호기관에서 응시> 1. 평가장 마련 2. 감독관 배정 3. 평가 실시 후 답안지 수거	<재적교에서 응시> 1. 평가장 마련 2. 감독관 배정 3. 평가 실시 후 답안지 수거
평가 후	시험지 수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답안지 송부	답안지 수령 후 성적처리

● 유의사항

- 평가 준비: 소년보호기관이 주관하고 재적교가 협조하여 평가 운영 준비
- 시험지 및 답안지 송부: 소년보호기관과 재적교가 협의하여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 일반우편 및 택배 발송을 금지하고, 업무 담당자 외 대리수령 불가
 - ※ 답안지는 시험지 수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인편으로 수령하였더라도 등기우편으로 송부 가능
- 평가 감독관 배정: 평가장을 마련한 곳에서 감독관 배정
 - ※ 평가 장소와 관계없이 소년보호기관 담당자는 반드시 감독관으로 배석
- 학생이 응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평가기간 동안 출결은 미인정 결시로 처리

차. 직업교육 위탁학생의 성적처리

1)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 등의 직업교육 위탁과정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가)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소속 학교에서 이수하는 보통교과 등의 수강자수는 소속 학교의 학생과 합해서 산출·입력한다. 다만, 학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강자수는 분리한다.

나) 산업(정보)학교, 직업교육거점학교, 시·도교육청이 인정하는 직업훈련기관 등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담당 기관에서 평가한 이수 과목,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이수학생수를 학생이 재적한 학교에 통보하면 이것을 그대로 입력해 줄 수 있다.

※ 위탁학생의 성적은 교육정보시스템 [학적-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자료관리]의 ‘성적’ 항목에서 입력함.

다)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위탁 교과와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평가한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등을 기록하거나, 이수 여부만을 기록한다.²⁾

라) 단, 아래 경우에 해당하여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P(이수)’로 처리한다.³⁾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

- 교육과정상 개인별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성취도 산출이 위탁교육 목적 달성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이수 내용, 시간수, 수업절차, 운영방식 등을 고려할 때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또는 직업교육센터 등, 일반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포함),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포함) 및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등에서 직업교육 위탁과정으로 개설한 교과(과정)를 계열(학과)이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강한 경우의 수강자수는 계열(학과)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계열(학과) 구분>

① 일반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포함) : 계열

②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운영교 : 학과

③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계열(과학, 국제, 체육), 학과(외국어, 예술)

(예시) 일반고등학교 A(10명), B(10명), C(10명),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D학과(12명), E학과(8명) 총 50명이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등에서 ‘드론 운용’을 수강하였을 경우 수강자수는 일반고등학교 30명,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D학과 12명, E학과 8명으로 분리하여 산출할 수 있음.

카. 현장실습생의 성적처리

1)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현장실습생(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도제식 현장교육훈련(OJT) 참여 학생 포함)에 대해서는 이수 여부, 실습기간을 해당 학교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2026학년도 3학년)만 해당.
 3) 2015 개정 교육과정(2026학년도 3학년)만 해당.

- 가) 현장실습을 제외한 교과 성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2026학년도 1·2학년)의 경우 교과목별 성적처리에 따라 산출하며, 2015 개정 교육과정(2026학년도 3학년)의 경우 학기별 종합 성적에 의하여 교과목별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등급 또는 성취도, 수강자수를 산출한다.
- 나) 현장실습 성적은 산업체에서 평가한 것과 학교에서 평가한 것을 합산하여 실습 참여 학생의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등 비교과 영역의 입력은 현장실습(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등) 기간 중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경우 재적학교 및 현장실습 대상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학급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라) 현장실습을 전문교과에 포함하여 운영할 경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전문교과 성적처리방식과 동일하게 산출하여 입력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하여 입력하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현장실습 유형, 직무분야(17개 교과군 중에서 입력), 기간, 내용을 다음 예시와 같이 입력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과목</th> <th>세부능력 및 특기사항</th> </tr> </thead> <tbody> <tr> <td>현장실습유형: 현장체험학습(산업체 견학)</td> <td></td> </tr> <tr> <td>현장실습 직무분야: 기계</td> <td></td> </tr> <tr> <td>실습기간: 2026.00.00.-2026.00.00.</td> <td></td> </tr> <tr> <td>실습내용: 자동차 조립 과정 견학</td> <td></td> </tr> </tbody> </table>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현장체험학습(산업체 견학)		현장실습 직무분야: 기계		실습기간: 2026.00.00.-2026.00.00.		실습내용: 자동차 조립 과정 견학		<table border="1"> <thead> <tr> <th>과목</th> <th>세부능력 및 특기사항</th> </tr> </thead> <tbody> <tr> <td>현장실습유형: 도제교육(미용)</td> <td></td> </tr> <tr> <td>현장실습 직무분야: 미용·관광·레저</td> <td></td> </tr> <tr> <td>실습기간: 2026.00.00.-2026.00.00.</td> <td></td> </tr> <tr> <td>실습내용: 헤어디자인 L3</td> <td></td> </tr> </tbody> </table>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도제교육(미용)		현장실습 직무분야: 미용·관광·레저		실습기간: 2026.00.00.-2026.00.00.		실습내용: 헤어디자인 L3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현장체험학습(산업체 견학)																					
현장실습 직무분야: 기계																					
실습기간: 2026.00.00.-2026.00.00.																					
실습내용: 자동차 조립 과정 견학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도제교육(미용)																					
현장실습 직무분야: 미용·관광·레저																					
실습기간: 2026.00.00.-2026.00.00.																					
실습내용: 헤어디자인 L3																					
<table border="1"> <thead> <tr> <th>과목</th> <th>세부능력 및 특기사항</th> </tr> </thead> <tbody> <tr> <td>현장실습유형: 산업체 현장실습</td> <td></td> </tr> <tr> <td>현장실습 직무분야: 재계</td> <td></td> </tr> <tr> <td>실습기간: 2026.00.00.-2026.00.00.</td> <td></td> </tr> <tr> <td>실습내용: 피복 아크 용접</td> <td></td> </tr> </tbody> </table>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산업체 현장실습		현장실습 직무분야: 재계		실습기간: 2026.00.00.-2026.00.00.		실습내용: 피복 아크 용접		<table border="1"> <thead> <tr> <th>과목</th> <th>세부능력 및 특기사항</th> </tr> </thead> <tbody> <tr> <td>현장실습유형: 기타(연계교육형 현장실습)</td> <td></td> </tr> <tr> <td>현장실습 직무분야: 디자인·문화 콘텐츠</td> <td></td> </tr> <tr> <td>실습기간: 2026.00.00.-2026.00.00.</td> <td></td> </tr> <tr> <td>실습내용: 웹페이지 제작 및 유지</td> <td></td> </tr> </tbody> </table>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기타(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현장실습 직무분야: 디자인·문화 콘텐츠		실습기간: 2026.00.00.-2026.00.00.		실습내용: 웹페이지 제작 및 유지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산업체 현장실습																					
현장실습 직무분야: 재계																					
실습기간: 2026.00.00.-2026.00.00.																					
실습내용: 피복 아크 용접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기타(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현장실습 직무분야: 디자인·문화 콘텐츠																					
실습기간: 2026.00.00.-2026.00.00.																					
실습내용: 웹페이지 제작 및 유지																					

- 마) 현장실습을 교과목에 포함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평가, 기록 방법에 따르고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서술식으로 입력한다.

타. 공동교육과정(및 온라인 학교) 수강생의 성적처리

- 1) (2022 개정 교육과정)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를 ‘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포함), 특성화고등학교 등).
 - 2) (2015 개정 교육과정) 거점학교에서는 공동교육과정의 해당 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포함), 특성화고등학교 등).
- ※ 공동교육과정 미이수 학생의 경우 성적 미산출 및 학생부 기재 제외
- ※ 출석을 2/3 이상인 학생은 학생의 선택과 상관 없이 모두 성적산출

※ ‘특성화고등학교’ 는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를 의미함.

- 일반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간 전문 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 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과 간 전문 교과Ⅱ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과Ⅱ 과목’ 으로 편성하고 전문 교과Ⅱ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 ※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

3) 본교(거점학교)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과목이라도 별도로 개설·운영하고, 별도로 성적을 산출한다.

< 공동교육과정 관련 과목 개설 및 성적 산출 >

구분	과목(강좌) 개설	성적 산출
본교-타교학생 미구분 운영	본교(거점학교) 학생 +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 공동교육과정 관련 규정에 따라 성적 산출
본교-타교학생 구분 운영	본교(거점학교)학생 (공동교육과정 아님)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공동교육과정 관련 성적 규정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4) 타 시도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성적은 해당 시도의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온라인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파. 학교 밖 교육 성적처리

1) 일반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및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학교 밖 교육: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및 고시 외 과목 포함), 교양 교과(군)

※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교과', '과목', '학점' 및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 ’ 을 입력한다. 다만,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객관적 교육내용(과목명, 이수학점, 객관적 학습 내용)만을 입력한다.

※ 과목명 앞에 별표(*)가 붙는 과목은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임.

<일반고 학교 밖 교육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예시>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명: 학교 밖 교육(기관유형)을 통해 ○학점 이수하고, ...(객관적 학습내용)...에 대해 학습함.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과의 학교 밖 교육:

전문교과 II

※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교과’, ‘과목’, ‘학점’ 및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한다. 다만,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객관적 교육내용(과목명, 직무분야, 이수학점, 객관적 학습 내용)만을 입력한다.

<직업계고 학교 밖 교육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예시>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명: 학교 밖 교육을 통해 직무분야(예: 기계, 디자인, 재료, 전자 등)를 ○학점 이수하고, ...(객관적 학습내용)...에 대해 학습함.

하. 목도나루학교 위탁학생의 성적처리

- 1)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목도나루학교 위탁학생이 응시한 평가의 성적처리 결과를 원적교로 통보한다.
- 2) 원적교에서는 목도나루학교의 성적처리 결과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입력한다.

거.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장애학생의 특정 교과목이나 특정 영역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의 성적 처리는 교과협의회에서 인정 점 부여 기준을 설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일반 학생과 공정성·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1)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별도의 평가장 설치·운영, 대독, 대필, 보조기기, 지원 인력 등 적절한 평가조정을 지원한다.
- 2)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점자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음성 평가자료를 지원하며,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한다. 또한 묵자(일반문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확대독서기(개인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 평가자료(118%, 200%, 350% / A4 중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 3)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을 위해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장애로 평가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 4)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학생을 포함하여 청각장애학생이 듣기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지필평가로 대체한다.
- 5)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종류	소년보호기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탁학생 (위탁교육기관)	건강장애학생 및 3개월 이상 외상적 부상 학생의 병원학교, 원격수업
학적사항	• 재학생에 준하여 관리함.	• 재학생과 동일하게 관리함.	• 재학생과 동일하게 관리함.
출결상황	• 소년보호기관의 출결 그대로 인정함. ※ 수업일수는 재적학교의 수업일로 계산하여 인정함.	• 위탁교육기관의 출결 그대로 인정함. • 평가기간 등 지정된 등교일은 재적교 에서 출결 처리함.	• 소속교의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 수업 출결을 합산하여 처리함. • 평가기간 등 소속학교의 등교일은 소속교에서 출결 처리함.
성적 (정기시험/ 수행평가)	<p><성적산출 소년보호기관 (교과교육과정 개설 소년원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보호기관의 성적을 인정함(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재·전·편입생의 성적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함. 소년보호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하되,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을 입력함. 소년원학교의 2차 정기시험 시작 직전일 까지 입교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적교 시험 응시 및 재적교에서 성적 처리함. 학기말 성적처리 이전 복교 시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함. <p><성적미산출 소년보호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보호기관에서 성적이 미산출되는 경우 재적교 평가에 응시함(미응시 시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따라 미인정 결시 처리함.) 	<p><성적산출 위탁교육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교육기관의 성적을 인정함(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하되,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을 입력함. 학기말 성적처리 이전 복교 시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함. <p><성적미산출 위탁교육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교육기관에서 성적이 미산출되는 경우 재적교 평가에 응시함.(미응시 시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따라 미인정 결시 처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교 평가에 응시함(소속교성적 산출에 포함). 소속교 평가 미응시의 경우 질병 결시로 처리함.
각종 비교과 영역	• 소년보호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함.	• 위탁교육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함.	•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함.
교육정보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호 처분자: 위탁학생 관리 - 8호 처분자: 재적교 출석인정 결석 처리 - 9,10호 처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교육과정개설 소년원학교: 위탁학생 관리 교과교육과정미개설 소년원: 미인정 결석 처리 소년분류심사원: 재적교 출석인정 결석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재적교 출석인정 결석 	•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함.	•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함.

*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과목이 교육정보시스템의 위탁학생 [자료관리], '성적의 {과목추가}-과목찾기' 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과목찾기의 과목명 목록' 에서 유사한 과목으로 선택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각 기관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되, 재적교 평가(정기시험·수행평가 포함)에 미응시한 경우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을 부여함.

※ 보호처분 6호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아동복지시설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고, 재적교(정기시험·수행평가)에 미응시한 경우 미인정 결시로 처리함.

5.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 및 기록

가. 2022 개정 교육과정(2026학년도 1·2학년)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 및 기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별표 9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따라 시행한다.

2)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석차등급’, ‘수강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다음의 교과(목)은 예외로 하여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가) 보통 교과 사회·과학 교과(군)의 융합 선택 과목(‘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특수교육 전문 교과: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수강자수’

나)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실험’ 및 체육·예술 교과(군)의 과목(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은 해당하지 않음): ‘교과’, ‘과목’, ‘학점’, ‘성취도’

다) 보통 교과 교양 교과(군)의 과목: ‘교과’, ‘과목’, ‘학점’, ‘이수여부’

3) ‘비고’에는 과목 개설 유형(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온라인 콘텐츠), 과목 이수 상황(미이수, 대체이수, 재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가)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학교’에서 개설한 이수 과목의 ‘석차등급’에는 ‘.’을 입력하며, ‘비고’에는 각각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로 표시된다.

나)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의 ‘비고’에는 ‘학교 밖 교육’으로, ‘온라인 콘텐츠’로 이수한 과목의 ‘비고’에는 ‘온라인 콘텐츠’로 표시된다.

다) 학점이수 인정기준 적용에 따라 ‘미이수’, ‘대체이수’, ‘재이수’한 학생의 경우 해당 과목의 ‘비고’에는 자동으로 각각 ‘미이수’, ‘대체이수’, ‘재이수’로 표시된다.

※ ‘재이수’란 미이수한 과목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다시 수강하여 이수한 경우를 말함.

4)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에 대해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 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군)의 전 영역을 고려하여 교과담당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다만, 체육·예술 교과(군) 및 전문교과(군)의 전공 실무 과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가) 체육·예술 교과(군):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나) 전문 교과(군)의 전공 실무 과목: 능력단위별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5) 보통 교과 중 교양 교과(군)는 과목명 및 학점을 입력하고 ‘이수여부’에는 ‘P’를 입력한다.

6) 제 2)항에 따라 석차등급을 산출하는 과목 중 수강자수가 5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에는 ‘석차등급’이나 ‘.’을 입력한다. 다만, 동일 입학년도 교육

과정 내에서 동일한 과목인 경우에는 ‘석차등급’란에 ‘석차등급’ 또는 ‘·’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7)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으로 이수한 과목은 제 2)항에 따라 성적을 산출하되, ‘석차등급’란에는 ‘·’을 입력한다.

8)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과’, ‘과목’, ‘학점’을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한다.

9) 공동교육과정 또는 온라인학교를 통해 재이수한 과목은 ‘교과’, ‘과목’, ‘학점’, ‘성취도’를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한다.

※ 공동교육과정 또는 온라인학교를 통해 재이수한 과목의 ‘비고’에는 ‘공동교육과정, 재이수’, ‘온라인학교, 재이수’로 표시된다.

10)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이수한 과목은 ‘교과’, ‘과목’, ‘학점’을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한다.

※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이수한 과목의 ‘비고’에는 ‘온라인 콘텐츠’로 표시되며,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재이수한 과목은 ‘온라인 콘텐츠, 재이수’로 표시된다.

나. 2015 개정 교육과정(2026학년도 3학년)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 및 기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77호) 별표 9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따라 시행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다음의 교과(목)는 예외로 하여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가) 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나)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실험’ 및 전문 교과Ⅱ, Ⅲ: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다) 보통 교과의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과’, ‘과목’, ‘단위수’, ‘성취도’

3) ‘비고’란에는 공동교육과정 및 학교 밖 교육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가)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의 ‘석차등급’란은 공란으로 두며, ‘비고’란에는 자동으로 ‘공동’으로 표시된다.

나)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의 ‘비고’란에는 자동으로 ‘학교 밖 교육’이 표시된다.

4)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에 대해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 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군)의 전 영역을 고려하여 교과담당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다만, 체육·예술 교과(군) 및 전문교과Ⅱ의 실무과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가) 체육·예술 교과(군) :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나) 전문 교과Ⅱ의 실무과목 : 능력단위 기반의 과목별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 5) 보통 교과 중 교양 교과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수강자수)’ 란과 ‘석차등급’ 란에는 ‘P’ 를 각각 입력한다. 다만, 교양 교과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 시에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수강자수)’ 란과 ‘성취도별 분포비율’ 란에는 ‘P’ 를 각각 입력한다.
- 6) 전문 교과Ⅰ 및 보통 교과[공통 과목 과학탐구실험,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는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를 입력하고, ‘석차등급’ 란에는 ‘석차등급’ 이나 ‘.’ 을 입력한다. 다만,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 ‘석차등급’ 란에 ‘석차등급’ 또는 ‘.’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 7)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를 입력한다.
- 8)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과’, ‘과목’, ‘단위수’ 를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 을 입력한다.

V.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1.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되, 영역별로 학급담임교사와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가 분담하여 평가하고, 활동 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등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종합하여 ‘특기사항’ 에 문장으로 입력한다.

나. 자율·자치(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의 이수시간은 영역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영역별로 활동 내용이 우수한 사항(참여도, 활동의욕, 진보의 정도, 태도 변화 등)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도록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 위주로 입력한다.

※ 자퇴·퇴학·제적·휴학의 경우 학적반영일을 기준으로 자율·자치(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누가기록과 이수시간, 특기사항을 입력함.

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봉사활동실적’ 에는 당해 학년도에 실시한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을 입력하되,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 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 학년의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각 영역과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봉사활동의 성격과 취지에 적합한 봉사활동 실적만 입력함(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은 ‘봉사활동 영역’ 으로

시행.)

- 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을 누가기록 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서식 또는 자체 개발한 서식 등을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마.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에는 학생의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입력한다.
- 바.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용은 ‘동아리활동’ 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이 경우 활동 내용은 학교장이 인정 한 기간 동안 수행한 것으로 한정한다.
- 사. ‘바’ 항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특기사항을 입력 하지 않는다. (정규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고등학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아. ‘나’ 항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 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명 및 특기사항 모두를 입력하지 않는다.
- 자. 자율·자치활동(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은 자율활동) 및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은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하고,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가 입력한다.

VI. 기타 사항

1. 평가관리실 설치·운영

학교에서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및 철저한 보안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에 ‘평가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평가관리실은 학교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출입문의 이중잠금장치, 출입대장 비치 및 작성 등 철저한 보안 장치가 마련되도록 한다.
- 나. 평가관리실에는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한 일련의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제반 시설이 구비되도록 한다.
 - 1) 평가와 관련한 주요 자료(고사 원안, 문제지, 답안지 등)를 보관할 수 있는 이중잠금 캐비닛
 - 2) 성적 처리 및 성적 관련 자료 등을 인쇄할 수 있는 컴퓨터 및 프린터
 - 3) 파쇄기, 소화기, CCTV, 무인경비시스템 등 설치
 - 4) 기타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다. 제출되어 평가관리실에 보관된 고사 원안, 문항정보표 등을 열람할 때는 반드시 책임자 입회 하에 이뤄져야 하며, 평가관리실 밖으로의 유출은 금지한다.
- 라. 평가관리실 책임자는 평가관리실 운영과 관련하여 수시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여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2. 성적관련 비위 교직원 처리

학교에서는 시험문제 유출, 성적 조작 등 학업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비위를 행한 교직원에게 대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해당부서에 사실관계 조사 또는 감사를 의뢰한다.

3. 기타

고등기술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 자율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특별학급,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특별학급,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인정 교육기관 및 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등에서도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이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업성적 관리가 되도록 한다.

<근거자료> : 세부적인 사항은 근거자료 참고

1. 교육부 훈령 제243호(2018.1.31. 일부개정), 제280호(2019.1.18. 일부개정)
제321호(2020.1.6. 일부개정), 제331호(2020.4.6. 일부개정)
제343호(2020.7.20. 일부개정), 제365호(2021.1.4. 일부개정)
제393호(2022.1.17. 일부개정), 제433호(2023.2.10. 일부개정)
제477호(2024.2.8. 일부개정), 제504호(2024.12.23. 일부개정)
제519호(2025.4.22. 일부개정), 제530호(2025.7.13. 일부개정)
제555호(2026.2.12. 일부개정)
2. 충청북도교육과정 총론 충청북도교육청 고시 제2026-5호
3. 2026학년도 충청북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중등교육과-3531(2026.2.27.)호)

부 칙

- 이 학업성적관리규정은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서술형·논술형 평가 관련 유의 사항>

1. 서술형·논술형 평가 반영비율은 교과협의회에서 결정

가. 서술형 평가

- 요약, 개념, 이해, 설명, 풀이과정 등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하는 평가로 답안을 작성하는데 있어 조직력이나 표현력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채점할 때 어느 정도 객관적인(모범) 답안이 존재하는 문항임(단답형, 완성형 제외)

나. 논술형 평가

- 비교적 길게(한 단락 이상으로 구성된 글) 답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학생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창의적·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조직력이나 표현력이 요구되는 평가임

2. 학교 단위에서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

가. 서술형·논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을 학기 초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 예고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안내

나.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수행평가 영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일제식 정기 지필평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없음

다. 서술형·논술형 평가 관련 자체연수 및 교과협의회 정기적 개최

라.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필평가의 시험시간을 확대할 수 있으며, 사전에 학생들에게 잘 안내하여 혼란이 없도록 유의하여 실시

3. 서술형·논술형 평가 채점 시 유의 사항

가. 채점 기준표를 작성할 때, 채점 기준에 문항 평가요소별 배점(유사 정답, 부분 점수)을 포함시키며, 유사 정답에 대한 부분 점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할 경우에는 채점기준표를 정정해야 한다.

나. 채점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교과 담당교사가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확인시키며, 이의 신청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이의 신청 절차 >

(1) 학생 성적 확인

- 교과별 채점 및 평가계의 성적 전산처리가 완료된 후 교과 담당 교사는 학생 본인에게 성적을 공개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결과 공개 후 7일 이내를 이의신청기간으로 두고 이를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2) 학생 이의신청 및 교과 담당 교사 검토

- 학생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교과 담당 교사는 신중히 검토한다.
- 해당 사항이 없을 시에는 확인 내용을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고 사안을 종결한다.
- 단순한 오류일 경우는 학생들에게 오류를 정정하는 내용을 통보하고 사안을 종결한다.

(3)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 중요한 오류일 경우 교과협의회를 열어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에 대해 협의한다.
- 교과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4) 결과 처리

- 심의 후 결정된 내용에 따라 오류를 정정한 후 학생들에게 통보하고 사안을 종결한다.

< 지필평가 기출문제 공개범위와 방법 >

- (1) 공개 기간: 지필평가 시작 1~2주 전 일주일
- (2) 공개 장소: 1층 본 교무실 앞 책상 위, 영상감지장치(CCTV)설치 구역 이내
- (3) 공개 시간: 일과 시간[08:30~16:30]
- (4) 공개 범위: 전년도 해당 시험 기출 원안지 사본 및 정답
- (5) 공개 방법: 열람 시 눈으로 확인(사진 촬영 불가)

< 지필평가 시험지 유출 시 처리 기준 >

- (1) 시험지 유출의 진위 여부를 파악한다.
- (2) 해당 학생(교직원) 진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한다.
-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안을 심의한다.
 - 유출자가 학생인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한 후 회의를 개최한다.
- (4) 재시험을 실시할 경우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에 공지한다.
- (5) 유출자가 학생인 경우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징계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한 후 징계를 처리한다.
- (6) 유출자가 교직원인 경우 도교육청에 알려 사실관계 조사를 의뢰하고 관련법에 따라 형사 처리한다.